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0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기타 조례 내용 중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리 (안 제2조의2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명 위촉위원 구체화 (안 제6조)
-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 개선·보완 및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법령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(안 제2조의 2제2호)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“중소·벤처기업지원센터”를 “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(안 제4조제1항제3호),
- 기금의 용도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으로 명확화 하였으며(안 제4조제1항제4호),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 하였음(안 제5조제3항).
- 또한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6조제3항)
- 그 밖에 법령명 붙여 쓰기, 불필요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 하는 등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관계법령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기타 조례 내용 중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(안 제2조의2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7조)
- 나.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 변경 및 통일 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다. 기타 조례 내용상 미비점 개선·보안 및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불필요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원안동의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6. 9. 8.~2016. 9. 28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호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의2제8호 중 “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제2항을 말한다”를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2조의2제9호 중 “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제3항을 말한다”를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제3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중소·벤처기업지원센터”를 “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

제5조제2항 중 “기업지원팀장”을 “기금업무 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

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역경제과장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3.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·세무사·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

제6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기업지원팀장”을 “기금업무 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융자대상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”를 “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의2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	2. ----- 「 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.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지식산업”이란 「 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제6조제2항을 말한다.	8. ----- 「 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9. “정보통신산업”이란 「 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제6조제3항을 말한다.	9. ----- 「 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(<u>중소·벤처기업 지원센터</u> 등)	3. ----- ----- <u>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</u> ---
4. <u>창업지원센터 입주자</u>	4. <u>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.

③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계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④、⑤ (생략)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고, 위원은 관련과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〈신설〉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기금업무 담당팀장
-----.

③ -----
----- 재무관-----

-----.

④、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기업지원팀장이 된다.

④ (생략)

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.

② 「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

③ (생략)

1. 지역경제과장
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
3.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·세무사·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

④ -----
----- 기금업무 담당팀장-----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 ----- 용자대상자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-----

-----.

② 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